문서번호	재무과-12937
결재일자	2015.7.20.
공개여부	부분공개(6)

주무관		재무과장	기획경제무장	
김대규	임현주	최상균	07/20 이용식	
협 조				

변상금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결에 따른 향후 조치 계획

2015. 7.

기획경제국 재무과

변상금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결에 따른 향후 조치 계획

변상금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결과 원고가 일부 승소함에 따라 기존 부과한 변상금 및 사용료중 착오 부과분에 대하여 전액 감액하고 재부과 하여 신뢰 세정을 확립하고자 함

I 개 요

- 사건명 : 2013누 32948 변상금등부과처분취소
- 원 고:신충환
- 🔲 피 고 : 성북구청
- 🔲 판 결 : 원고 일부 승(2015.6.17.)
 - 주요내용
 - 공유수면 법리 적용 관련 사항 [피고 승]
 - 변상금 사전 예고 관련 사항 [피고 승]
 - 공시지가 적용 관련 사항 [원고 일부 승]

Ⅲ 추진경과

- 2015.6.24. 서울고등검찰청 상고포기 지휘 요청 (재무과-11353)
 - 변상금,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접지 공시지가 적용 법리 착오 적용에 따른 상고 포기
- **2015.7.1. 서울고등검찰청 상고 포기 결정 (소송사무제2과-5156)**
 - 상고를 제기하여도 승소가능성이 희박하여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상금을 재산정하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

Ⅲ 향후계획

- 📕 변상금 부과에 따른 사전예고 통지
- 공시지가 착오분에 대한 착오 부과분 전액 감액 및 재부과
 -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 소급 적용
 - 법원 판결 취지에 부합되는 공시지가 적용 (인근지번 공시지가 산술평균)

○ 착오분 변상금 감액 및 재부과 내역

점유지 면적	면정 요	용도	0.0	변상금 내역				비고
	9	요율	착오 브	루과 변상금	재 브	부과 변상금) <u> </u>	
하월곡동 152 62r	602	62㎡ 주거	٦ ٥ ٥٥٠	과세 년월	변상금 (감액)	과세 년월	변상금 (재부과)	인근지번 공시지가 산술평균 적 용
	O2m		주거 0.005	2012.8	5,377,570원	2015.8	3,869,650원	

○ 착오분 점용료 감액 및 재부과 내역

점유지 면적 용.	면정	유드	요율	점용료 내역				ы ¬
	9 -	51 12	착오 브	쿠과 점용료	재 -	쿠과 점용료	_ 비 고	
하월곡동 163 152 m²	163	163 ad	1 0 02	과세 년월	점용료 (감액)	과세 년월	점용료 (재부과)	인근지번 공시지가
	영업 0.03	2012.8 ~2014.8	88,504,120원	2015.8	53,331,850원	산술평균 적 용		

붙임: 공공용지 점용료 산출 내역서 1부. 끝.